

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

의 안 번 호	3 - 342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01. 8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○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조정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코자함.

2. 주요골자

가.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관리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분쟁조정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2조)

나.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(안 제3조내지제7조)

다. 분쟁조정의 당사자 및 조정의신청등 처리기간을 정함(안 제8조내지제11조)

라.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· 조정사항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조정의 효력을 정함
(안제12조내지제15조)

마.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6조)

바. 조정절차에 소요되는 필요한 조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20조)